

2022

화성예술가활동지원 지원안내서

www.hcf.or.kr

2022 화성예술가활동지원 지원안내서

@경기예술지원 모든예술31



온라인 설명회 개최

2022 화성예술가활동지원 온라인 사업설명회 개최

- 일시: 2022. 1. 23.(일) 17:00
- 장소: 재단 Youtube 동영상 업로드
- 영상 내 FAQ 확인 가능
- 문의: 예술창작지원팀(031-290-4672)



부정청탁금지

화성시문화재단은 보조금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비리없는 공정심사를 위해 어떠한 청탁도 받지 않습니다. 청탁 등 비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재단 규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로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초석이 되는 길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며



어느덧 변화가 일상이 된 2022년, 새로운 흐름 속에 놓인 화성시 예술 지원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예술생태에 닥친 많은 어려움이 당연해진 상황을 당연히 여기지 않으려 합니다.

(재)화성시문화재단은 예술지원센터의 조직과 함께 변혁하는 시대 안에서 지역 예술인과 예술단체 여러분의 안정적인 창작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예술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1월 공모로 진행하는 2022화성예술가활동지원(경기예술활동지원 '모든예술31' 포함)사업은 화성시 및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예술단체·예술인의 다양한 예술창작과 예술활동을 지원합니다. 올해에도 당면한 위기 상황 속에서 이번 지원 사업이 든든하게 예술창작과 예술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희망하며 예술인(단체)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2. 1. 20.
(재)화성시문화재단

2022년 화성시문화재단 예술지원센터 주요 공모계획 안내

지원사업명		지원 분야	지원내용	공모시기	접수 방법	문의처	비고
예술 지원 센터	예술 창작 지원팀	공연 예술	신규 공연예술 창작 준비·기획과정 지원	2022. 1. 24.(월) ~ 2. 9.(수)	전자 우편 artsupport@hcf.or.kr	031-290-4672	모든 예술31
			신규 공연예술 창작 및 활동(공연)지원				
			기존 공연예술활동(공연)지원				
		시각 예술	신규 시각예술 창작 준비·기획과정 지원				모든 예술31
			신규 시각예술 창작 및 활동(전시, 상영)지원				
			기존 시각예술활동(전시, 상영)지원				
		기술 융·복합	신규 기술 융·복합 예술 창작준비·기획과정 지원				모든 예술31
			신규 기술 융·복합 예술 창작 및 활동(전시, 상영)지원				
			기존 기술 융·복합 예술활동(전시, 상영)지원				
		문학 분야	신규 문학분야 작품 출간 지원				모든 예술31
			기존 문학작품 북토크 등 출간회 지원				
		공간창작 활성화지원	전 분야	예술창작활동을 위한 창작공간 임차비 월 50% 지원	2월 중	031-290-4676	
		대관료 지원	공연, 시각	예술 창작 작품 발표를 위한 관내 공연장·전시장 대관료 1회 90% 지원	2월~3월 중	031-290-4673	
예술인 지원팀	예술인 학교	연구 TA	지역을 기반으로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운영	1월 중	www.hcf.or.kr 공고 예정	031-290-4603	
		일반 TA	문화예술교육 전문 예술인 양성 (수료증 발급)	3월, 7월			
	신진예술가 자립지원	전 분야	신진예술인 창작 및 자립준비금 지원 (개인당 300만원X10명)	3, 4월		031-290-4602	
	예술인 협업 사업 지원	전 분야	예술과 사회, 다양한 분야와의 예술 협업 활동에서 예술인의 직무를 제공하는 협업 예술프로젝트 지원	5월		031-290-4602	
예술 교육 지원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전 분야	융복합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운영	3, 4월	www.hcf.or.kr 공고 예정	031-290-4691	
	예술캠프	전 분야	전문 예술가와 함께하는 예술캠프	10월			
예술 창작 지원팀	아르코공연연습센터 @화성	전 분야	정기대관- 공연예술 연습공간 대관(유료)	전년도 11월, 5월	www.arko.or.kr/pspace/	031-8015-8156	
		전 분야	수시대관- 공연예술 연습공간 대관(유료)	상시			

2022년 화성예술가활동지원사업 주요 변화사항

● 공모사업 지원규모 및 지원범위 확대

- 전년도 사업별 상위 선정액을 평균 지원규모로 설정함으로써 전반적인 지원규모 상향조정을 통해 예술인의 실정을 반영하였습니다.
- 전년대비 전체 지원금액의 확대(185%)로 더 많은 예술가에게 더 다양한 예술창작과 예술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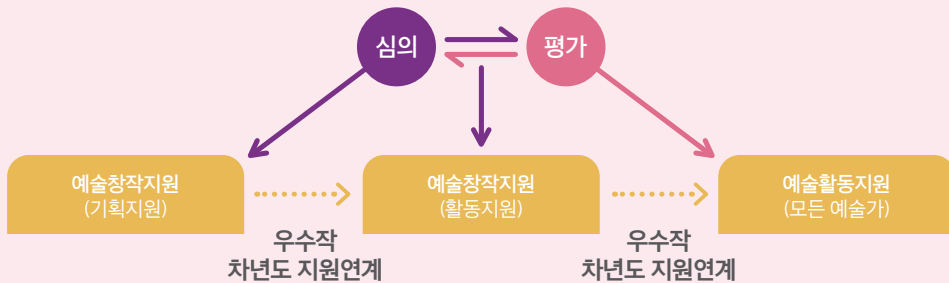
구분	2021년	2022년	증가율
예산	318,600천원	578,600천원	181%
지원금	283,000천원	529,000천원	187%
지원건 수	38건	60건	160%
지원 규모	·공연평균: 8,600천원 ·시각평균: 4,200천원 ·문학평균: 4,200천원	·공연평균: 15,000천원 ·시각평균: 5,000천원 ·기술융·복합평균: 5,000천원 ·문학평균: 4,000천원	전년도 지원 상위액으로 평균값 설정

● 예술창작 준비과정(기획단계) 신규 지원

- 예술창작 준비과정(기획단계)의 신규 지원을 통해 창작·실연·유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지원체계의 초석을 다지고자 합니다.

● 심의·평가의 연계를 통한 지원예술 역량강화와 연속성 있는 지원체계 구축

- 2021년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외부 전문 심의·평가위원회의 심의와 평가의 연계를 통해, 지원예술의 환류를 도모하고 이후 12월 중 성과평가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평가를 통해 우수작은 다음 지원단계의 차년도 지원 선정이라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평가 결과를 차년도 심의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 예술인(단체)의 창작활동 집중을 위한 지원 단순·명료화

- 예술지원센터 조직을 통해 예술인지원, 예술창작지원, 예술교육지원의 세 가지 분류가 이루어짐에 따라 전문 '예술창작 및 활동' 지원에 집중하는 화성예술가활동지원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장르별 여러 갈래의 지원체계 분류를 일부 통합하고, 명칭을 알기 쉽게 바뀌 집중화·단순화 했습니다.

구분	2021년	2022년
지원사업 분류	① 예술창작지원 (쇼케이스/창작지원)	① 예술창작지원(기획/활동)
	② 예술활동지원	② 예술활동지원(모든예술31)
	③ 화성특화예술지원 (지역기반예술)	③ 화성특화예술지원→지원방식 변경 지역예술인(단체) 가산점부여
	(공간지원)	사업 일몰(‘공간창작활성화지원사업’으로 이관)
	(시민참여예술)	예술활동지원 ‘서남부권 20% 할당제’ 로 지원방식 변경
	(청년지원)	예술창작지원 ‘청년 10% 할당제’로 지원방식 변경

- 지원예술 성격(신규/기존, 창작/실연/유통)에 따른 지원갈래를 명료하게 구분하였습니다.

지원예술성격		2022년
		지원명칭
신규예술	① 예술창작지원 (쇼케이스/창작지원)	예술창작지원(기획)
	② 예술활동지원	예술창작지원(활동)
	③ 화성특화예술지원	
기존예술	기존 창작물 발표(유통)	예술활동지원(모든예술31)

- 지원신청서식 및 성과보고 정산보고서식에서 중복되는 부분이나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는 등 신청 편의를 개선하였습니다.

- 고령자(만65세)의 지원절차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접수기간 중 2일(2/3~4)간 현장접수를 지원합니다.
(접수장소: 동탄복합문화센터 M2층 통합사무실, 사전 유선연락 필수)

● 다양성 있는 예술지원을 위한 지원체계 변경 및 보완

- 지원 구분에 ‘기술 융·복합’을 추가하여 변혁하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예술창작 및 활동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구분	2021년	2022년
지원장르	공연예술, 시각예술, 문학	공연예술, 시각예술, 기술 융·복합, 문학분야

- 예술인(단체)의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지원할당제를 도입했습니다.

구분	2021년	2022년
자격기준 (일부발체)	(개인) 예술전공 대학 졸업자 이상	· (개인) 예술전공 대학 졸업예정자 이상
지원할당제	-	· 청년예술 지원할당(예술창작지원의 10%) · 서남부권예술 지원할당(예술활동지원의 20%)

2022
화성예술가활동지원
지원안내서

I

2022 화성예술가 활동지원 공모 구성



I

2022 화성예술가 활동지원 공모 개요

① 사업개요

- **사업명** 2022 화성예술가활동지원(경기예술활동지원 포함)
- **사업일정**
 - 공고기간 : 2022. 1. 20.(목) ~ 2. 9.(수) 21일간
 - 접 수 : 2022. 1. 24.(월) ~ 2. 9.(수) 18:00 17일간
 - 면접심사 : 2022. 2. 24.(목), 2. 25.(금), 2. 28.(월) 3일간
 - 결과발표 : 2022. 3. 4.(금) 홈페이지 공고 예정
- **지원분야** 공연예술, 시각예술, 기술 융·복합, 문학분야
- **지원규모** 총 5억2천9백만원(시비 : 4억6천6백만원 / 도비 : 6천3백만원)

(단위 : 백만원)

② 지원분야

구분	예술 분야	지원 구분	지원내용	지원규모	신청가능액
예술 창작 지원	공연 예술	기획	창작 및 기획지원(기획, 실험, 리서치, 음악 및 대본개발 등)	4백만원 (정액)	4백만원(정액)
		활동	창작활동 및 초연 지원	1천 5백만원 (평균)	최저 4백만원 최고 2천만원
	시각 예술	기획	창작 및 기획지원(기획, 실험, 리서치, 연구개발 등)	3백만원 (정액)	3백만원(정액)
		활동	창작활동 및 전시/상영 지원	5백만원 (평균)	최저 3백만원 최고 1천만원
	기술 융·복합	기획	기술 융복합 창작 및 기획지원(기획, 시스템, 영상제작, 연구개발 등)	3백만원 (정액)	3백만원(정액)
		활동	창작활동 및 공연/전시/상영 지원	5백만원 (평균)	최저 3백만원 최고 1천만원
	문학 분야	활동	문학분야 창작 및 출간지원 ※ 연내 출간의무 및 300만원 이하 지원 시 출간물로 정산 있음	4백만원 (평균)	최저 3백만원 최고 5백만원

구분	예술 분야	지원 구분	지원내용	지원규모	신청가능액
예술 활동 지원	공연 예술	모든 예술 ³¹	공연예술활동(기존 레퍼토리, 정기연주회 등) 지원	1천 1백만원 (평균)	최저 3백만원 최고 1천 6백만원
	시각 예술		기존작품 전시/출간/상영 지원	3백만원 (평균)	최저 3백만원 최고 7백만원
	기술 융·복합		기존작품 공연/전시/출간/상영 지원	3백만원 (평균)	최저 3백만원 최고 7백만원
	문학 분야		작품 북토크 및 북콘서트 등 출간 회 지원	3백만원 (평균)	최저 2백만원 최고 4백만원

1. 예술창작지원 : “신작”창작을 위한 지원사업이고, 화성시 관내에서 창작활동 및 예술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예술활동지원 : 기존 작품으로도 발표가 가능한 지원사업이며, 화성시 관내에서 예술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 사업계획내용 등에 따라 차등지원하며, 한 신청자당 하나의 지원사업만 신청 가능합니다.
- ※ [예술창작지원(기획)] 평가 결과 우수작 차년도 [예술창작지원(활동)] 지원 선정, [예술창작지원(활동)] 평가 결과 우수작 차년도 [예술활동지원] 지원 선정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 ※ 본 사업은 당해연도 내에 완결되는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 예술인 지원 관련 사업은 화성시문화재단 예술지원센터 예술인지원팀에서 별도 진행하는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예술교육 관련 사업은 화성시문화재단 예술지원센터 예술교육지원팀에서 별도 진행하는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예술가 지원할당제>, <서남부권 지원할당제> 시행안내

⑤ 청년예술가 지원할당제

예술창작지원분야의 전체 선정자 중 10%는 청년(공고일 당시 만 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예술가 또는 해당 청년예술가가 대표인 단체)예술을 선정하는 제도

※ 화성시 청년기본조례 제3조 정의에 따른 연령기준임

※ 청년예술가로 체크하여 신청한 경우 최종 선정 후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연령 확인 필수(청년 해당 아닐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⑥ 서남부권 지원할당제

예술활동지원분야의 전체 선정 활동 중 20%는 화성시 서·남부권에서 수행되는 예술 활동을 선정하는 제도

※ 서·남부권(송산, 서신, 마도, 비봉, 매송, 팔탄, 장안, 양감면/남양, 우정, 향남읍/새솔동) 활동으로 체크하여 신청한 경우 최종 선정 후 예술활동은 반드시 화성시 서·남부권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③ 공통 신청자격

• 공통 신청 자격

화성시 관내에서 예술 및 창작 활동을 수행할 화성시 및 경기도 거주(소재)
예술인·예술단체

구분	내용
예술인	· 해당분야 전공자(대학 졸업예정자 이상) ·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예술활동에 관한 세부 기준의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내 자료참조) · 문화관광체육부 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인 패스의 발급이 완료된 자
예술단체	·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한 예술법인 및 단체 · 지정 전문예술법인·단체 ·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 등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단체 내 전문예술인의 구성비율이 50%이상인 단체
예술동호회	· 해당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예술동호회

※ 위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개인’ 자격으로 신청할 경우 지원 신청자가 주요 실연자(개인)이어야 함.

• 거주지 확인 기준 서류

신청구분	확인서류
개인	주민등록등본
단체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단체의 대표자 혹은 단원의 주소지 인정 불가

※ 선정 후 주소지 확인 시 공고일 당시 경기도/화성시 거주 확인불가 시 선정취소

- 화성시 거주(소재) 예술인·예술단체의 경우 지원 신청시 가산점 부여

- 화성시 거주(소재) 예술인(단체)로 가산점 해당할 경우 지원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등 확인 가능한 문서로 공고일 당시 화성시 거주(소재)가 확인되어야 함

- 화성시 이외 경기도 거주(소재)자 선정 후 거주지 증빙자료 제출

「지원자 신뢰 신청제」 운영

지원신청 시 전문예술인·단체 여부, 활동경력과 신청자격 등에 대하여 신청 주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지원자 신뢰 신청제」를 운영합니다. 화성시문화재단은 지원 신청자의 판단과 선택을 존중하고 신뢰하며 별도의 조정 없이 심의를 진행합니다. 부정확한 정보, 제출 자료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청 주체인 예술인·단체 여러분은 공모 내용을 숙지하신 후 책임감 있게 지원사업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④ 신청불가 대상 및 사업

• 신청 불가 대상

- 공고일 당시 경기도 거주(소재)자가 아닌 개인 또는 단체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학교, 종교기관, 친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
 - 지원금을 지원받기도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관련법령 규정을 위반한 개인 및 단체
 - 정산서 미제출 개인, 단체
 -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도 반납하지 않은 개인, 단체 선정 후 경기도 주소지 확인 시 공고일 이후 전입한 개인·단체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해 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 ⇒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1항 15호 “영리의 목적으로 청소년기본법제3조제3호의 청소년활동의 기획 주관 운영을 하는 사업장(이하 청소년활동기획업소)”에 해당하는 예술단체 선정시, 선정 후 성범죄 경력조회회신서 제출에 관한 증빙 요청(필수절차)

• 신청 불가 사업

- 국고 및 지자체, 공공기관 및 단체의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화성시청, 화성시 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타 기초문화재단 등)
- 정치적, 종교적, 상업적 목적의 사업
(※ 목적인 바 아니더라도, 정치·종교·상업적 색채가 짙은 프로그램은 지원불가)
- 학교 · 종교 · 시민단체의 행사성 사업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 지역축제 등의 그 부속 행사로 계획된 사업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시설의 건립과 매입, 재건축, 기금적립 및 용자 지원 사업
- 기금 적립과 용자 지원 사업
- 지원금을 통한 재교부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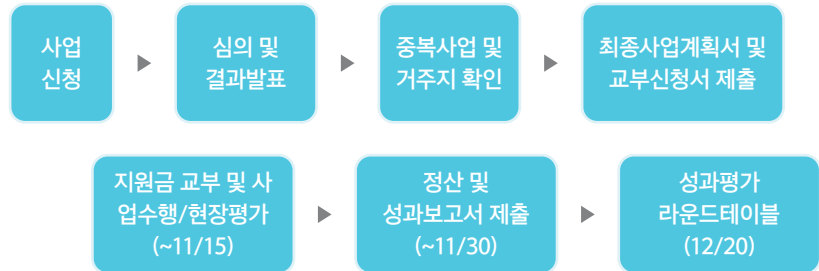
• 중복신청 및 선정 관련 안내

- 동일·유사한 사업으로 (타 기관 지원 사업 포함) 복수의 지원사업 선정 불가
- 동일한 신청자(단체)가 본 지원사업 2개 이상의 분야에 중복 지원 신청 불가
- 동일한 예술가(또는 단체)가 (재)화성시문화재단의 ‘대관료 지원’, ‘공간창작활성화지원’ 사업 간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중복 선정은 불가

⑤ 공모추진일정

구분	일 정
공고기간	2022. 1. 20.(목) ~ 2. 9.(수) 21일간
사업설명회	2022. 1. 23.(일) 17:00 화성시문화재단 유튜브 채널 온라인 영상 업로드
접수기간	2022. 1. 24.(월) ~ 2. 9.(수) 18:00 17일간
행정심의	2022. 2. 11.(금)
서류심의	2022. 2. 17.(목) ~ 18.(금) 2일간
면접심의	2022. 2. 24.(목), 2. 25.(금), 2. 28.(월) 3일간
발표	2022. 3. 4.(금) 화성시문화재단 홈페이지(hcf.or.kr) 발표 예정

⑥ 추진절차



⑦ 심의위원회 구성

공연예술A / 공연예술B / 시각예술 / 기술 융·복합 / 문학분야 별 공개추천 및 모집을 통해 선정한 외부전문가 15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예술분야별 구성된 심의 위원회는 현장평가를 통한 한류까지 담당하여 진행합니다.

구 분	2022년
심의-평가 위원회 구성	공연예술A(연극, 무용, 전통)
	공연예술B(음악, 뮤지컬, 다원)
	시각예술(회화, 도예, 설치, 사진, 전통)
	기술 융·복합(영상/영화, 미디어아트, 다원)
	문학

⑧ 평가

• 사업 평가

- 지원받은 사업은 필수적으로 현장평가 또는 컨설팅을 받아야 하며 관련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 영상, 정산서, 성과보고서, 설문조사지 등 관련 자료를 기한(11월 30일) 내에 성실히 제출해야 합니다. (영상 등 성과 관련 자료 의무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시 평가 불이익이 있습니다.)
- 심의-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 평가 및 성과보고서·결과물을 평가하거나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성과평가 라운드테이블이 진행될 예정이며, 심의결과는 내년 지원사업 심의 시 반영됩니다.

* 성과평가 라운드테이블: 2022년 12월 20일 10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소회의실(필참)

9 지원대상 사업의 변경조치

- 사업 선정 후 지원신청서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의 과도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변경에 따른 조치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

구 분	변경항목	해당분야	조치사항
사업 주체	사업의 주체 변경 ※ 실질적 주체 변경이 아닌 경우는 예외	전 분야	내부검토결과에 따라 지원 금 취소 가능
포기	사업포기기간 이후 사업포기 ※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예외		지원금 취소 및 다음해 예술창작지원활동 신청 시 불이익
사업량	지원신청 당시 사업일수(횟수) 50% 초과 축소		지원금 삭감
변경 미신청	변경 신청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변경신청 하지 않은 경우 ※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예외		1~2회 : 주의 및 사후변경 신청 3회 이상 : 평가에 반영 (차년도 심의에 반영 가능)

10 접수방법

- 전자우편으로 제출서류 및 자료 발송(artsupport@hcf.or.kr)
- **현장 접수 지원** : 고령자(만65세 이상)에 한해 현장접수 지원(2/3~4)
 - ※ 신청서(양식)는 화성시문화재단 네이버 블로그(blog.naver.com/hcfart)에서도 다운 가능
 - ※ 접수여부는 개별 전자우편을 통해 개별 회신 예정
 - ※ 별도의 신청서(양식)로 제출시 심의에서 제외됨

2022
화성예술가활동지원
지원안내서

II

공연예술분야 세부 사업별 공모안내



III

공연예술분야 세부 사업별 공모안내

① 공모내용

- **예술창작지원(기획)** 공연예술 창작준비·기획과정 지원
- **예술창작지원(활동)** 공연예술 작품 창작 및 초연
- **예술활동지원(모든예술31)** 기존 공연작품(기존 레퍼토리 및 작품, 정기연주회 등) 실연

② 지원규모

- **예술창작지원(기획)** 정액 4백만원
- **예술창작지원(활동)** 평균 1천 5백만원(단체 기준)
최저 4백만원~ 최고 2천만원 신청 가능
- **예술활동지원(모든예술31)** 평균 1천 1백만원(단체 기준)
최저 3백만원~ 최고 1천 6백만원 신청 가능

③ 신청자격

화성시 관내에서 예술창작 및 활동 진행할 경기도 거주(소재) 예술인(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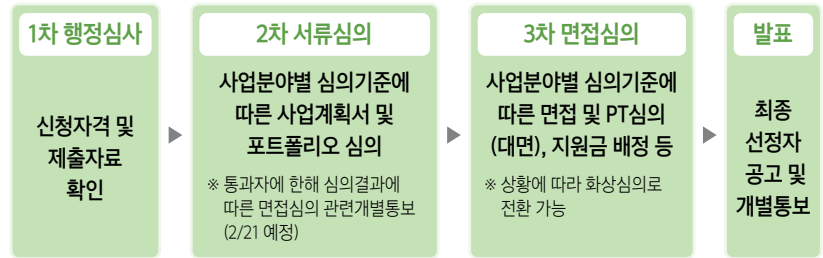
④ 세부 지원방향

구분	지원내용	성과물*필수	지원한도 (백만원)
예술창작 지원 (기획)	• 공연예술창작과정지원(기획, 실험, 리서치, 음악 및 대본개발 등) • 외부전문가 컨설팅 1회	영상, 대본, 음악 등 결과물	4백만원 (정액)
		성과보고서	
예술창작 지원 (활동)	• 창작 공연 및 무대화 되지 않은 신규공연의 초연 지원 • 외부전문가 현장평가 1회	공연 진행	최저 4백만원 최고 2천만원
		사진 또는 영상 포함 성과보고서	
예술활동 지원	• 공연 활동지원(기존 레퍼토리, 정기연주회 등)	공연 진행	최저 3백만원 최고 1천6백만원
		사진 또는 영상 포함 성과보고서	

⑤ 심의방식

- **심의기준** (역량평가) 사업주체의 예술역량, 사업주체의 발전가능성, (기획력) 예술성, 보편성, 사업 계획의 완성도

• 심의절차



※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금 결정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코로나19 관련 정부대응 조치에 따라 심의 방식과 절차가 변경될 수 있음.

⑥ 필수 제출자료

-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1부
- 포트폴리오 1부
- 예술활동 영상자료 1편(러닝타임 3분 이내)
- **화성시 거주/소재자로 가산점 해당하는 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 **서류심의 통과자** PT자료 1부
 - 2차 서류심의 통과 시 제출하며 상세 내용은 면접심의 대상자에 한해 다시 안내
 - PDF 파일로 제출(1페이지에 1면 보기)

● 파일명 설정 안내 ●

📁 메일 제목 및 파일명

- 예술창작지원(기획)_공연_지원자명(단체명)
- 예술창작지원(활동)_공연_지원자명(단체명)
- 예술활동지원(모든예술31)_공연_지원자명(단체명)

- ※ 공고문 내 첨부파일의 지원신청서 지정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 전자우편으로 제출서류 및 자료 발송(artsupport@hcf.or.kr)
- ※ 추후 선정자에 한해 서명한 지원서 원본 제출
- ※ 접수마감일 마감시간(18:00) 이후 제출서류 미인정
- ※ 접수여부는 개별 전자우편을 통해 개별 회신 예정
- ※ 별도의 신청서(양식)로 제출시 심의에서 제외

⑦ 유의할 점

- 예술창작지원(기획), 예술창작지원(활동), 예술활동지원 중 택1하여 지원 신청해 주세요.(동일인-단체-의 중복신청 및 여러 건 신청은 불가합니다)
- 개인의 경우 1인극, 독주, 독창, 독무 작품일 경우를 권장하며 신청자 본인이 실연자여야 합니다.
- 단체의 경우 지원금의 5%에 해당하는 비용은 자부담 편성이 필수입니다.
- 동일한 사업으로 추후 연속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예술창작지원(기획)’부터 단계별 신청을 권장합니다.
- 동일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타문화재단, 지자체 등의 지원을 받은 사업은 지원 선정 이후라도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 취소됩니다.
- 표절작품을 지원신청 하였을 경우, 지원이 결정된 후에도 지원결정이 취소되며, 해당단체·대표자 및 당사자는 향후 지원사업 신청이 불가합니다.
- 지원금을 받는 예술활동에 수익이 발생하는 모델을 권장하며, 발생한 수익금은 전액 해당 지원사업에 사용하거나 정산 시 반환이 원칙입니다.
- [예술창작지원(기획)] 평가 결과 우수작 차년도 [예술창작지원(활동)] 지원 선정, [예술창작지원(활동)] 평가 결과 우수작 차년도 [예술활동지원] 지원 선정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금년 평가결과는 차년도 심의에 반영됩니다.

⑧ 홍보물 제작 관련 안내

- 각종 홍보물(현수막, 포스터, 전단, 팸플렛 등)과 인쇄물을 제작하는 경우
[후원: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화성시, 화성시문화재단] 기재 및 로고 삽입 필수
- 공연프로그램, 리플렛, 포스터, 도록 등 인쇄물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화성시, 화성시문화재단의 화성예술가활동지원(경기에
술활동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았습니다.” 기입 필수
- 서적, 음반 등 인쇄물
“이 책(음반)은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화성시, 화성시문화재단의 화성예술가활동지
원(2022 경기예술활동지원사업)을 지원받아 발간(제작)되었습니다.” 기입 필수
- 후원로고 다운로드 및 동탄복합문화센터 게재 홍보물 규격 바로가기
blog.naver.com/hcfart

※ 사업 1개월 전 홍보물(인쇄물 또는 이미지)을 담당자에게 송부하여 재단 홈페이지에 업로드되
어야 합니다(필수).

⑨ 문의

- 화성시문화재단 예술창작지원팀 031-290-4672
- 문의시간 평일 10시~17시(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2022
화성예술가활동지원
지원안내서

III

시각예술분야 세부 사업별 공모안내





시각예술분야 세부 사업별 공모안내

① 공모내용

- **예술창작지원(기획)** 시각예술 창작준비·기획과정·연구과정 지원
- **예술창작지원(활동)** 시각예술 작품창작 및 전시/상영 활동 지원
- **예술활동지원(모든예술31)** 기존 작품 전시/출간/상영 활동 지원

② 지원규모

- **예술창작지원(기획)** 정액 3백만원
- **예술창작지원(활동)** 평균 5백만원
최저 3백만원 ~ 최고 1천만원 신청 가능
- **예술활동지원(모든예술31)** 평균 3백만원
최저 3백만원 ~ 최고 7백만원 신청 가능

③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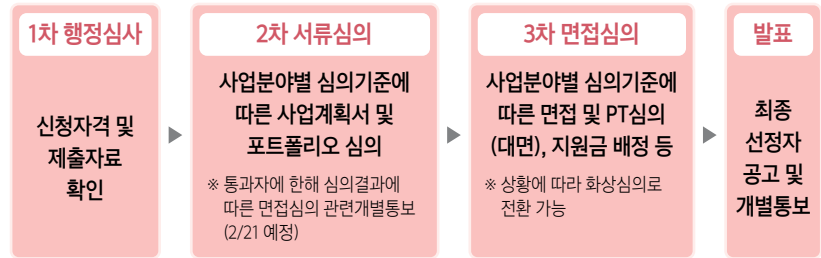
화성시 관내에서 예술창작 및 활동 진행할 경기도 거주(소재) 예술인(단체)

④ 세부 지원방향

구 분	지원내용	성과물*필수	지원한도 (백만원)
예술창작 지원 (기획)	• 시각예술창작과정지원(기획, 실험, 리서치, 영상제작, 연구개발 등) • 외부전문가 컨설팅 1회	영상, 사진, 연구결과 등 결과물	3백만원 (정액)
		성과보고서	
예술창작 지원 (활동)	• 창작활동 및 전시/상영 지원 • 외부전문가 현장평가 1회	전시/상영 진행	최저 3백만원 최고 1천만원
		사진 또는 영상 포함 성과보고서	
예술활동 지원	• 기존작품 전시/출간/상영 지원	전시/출간/상영 진행	최저 3백만원 최고 7백만원
		사진 또는 영상 포함 성과보고서	

⑤ 심의방식

- **심의기준** (역량평가) 사업주체의 예술역량, 사업주체의 발전가능성, (기획력) 예술성, 보편성, 사업 계획의 완성도
- **심의절차**



※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금 결정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코로나19 관련 정부대응 조치에 따라 심의 방식과 절차가 변경될 수 있음.

⑥ 필수 제출자료

-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1부
- 포트폴리오 1부
- **화성시 거주/소재자로 가산점 해당하는 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 **서류심의 통과자** PT자료 1부
 - 2차 서류심의 통과 시 제출하며 상세 내용은 면접심의 대상자에 한해 다시 안내
 - PDF 파일로 제출(1페이지에 1면 보기)

● 파일명 설정 안내 ●

☞ 메일 제목 및 파일명

- 예술창작지원(기획)_시각_지원자명(단체명)
- 예술창작지원(활동)_시각_지원자명(단체명)
- 예술활동지원(모든예술31)_시각_지원자명(단체명)

- ※ 공고문 내 첨부파일의 지원신청서 지정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 전자우편으로 제출서류 및 자료 발송(artsupport@hcf.or.kr)
- ※ 추후 선정자에 한해 서명한 지원서 원본 제출
- ※ 접수마감일 마감시간(18:00) 이후 제출서류 미인정
- ※ 접수여부는 개별 전자우편을 통해 개별 회신 예정
- ※ 별도의 신청서(양식)로 제출시 심의에서 제외

⑦ 유의할 점

- 예술창작지원(기획), 예술창작지원(활동), 예술활동지원 중 택1하여 지원 신청해 주세요.(동일인-단체-의 중복신청 및 여러 건 신청은 불가합니다.)
- 단체의 경우 지원금의 5%에 해당하는 비용은 자부담 편성이 필수입니다.
- 동일한 사업으로 추후 연속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예술창작지원(기획)’부터 단계별 신청을 권장합니다.
- 동일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타문화재단, 지자체 등의 지원을 받은 사업은 지원 선정 이후라도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 취소됩니다.
- 표절작품을 지원신청 하였을 경우, 지원이 결정된 후에도 지원결정이 취소되며, 해당단체·대표자 및 당사자는 향후 지원사업 신청이 불가합니다.
- 지원금을 받는 예술활동에 수익이 발생하는 모델을 권장하며, 발생한 수익금은 전액 해당 지원사업에 사용하거나 정산 시 반환이 원칙입니다.
- [예술창작지원(기획)] 평가 결과 우수작 차년도 [예술창작지원(활동)] 지원 선정, [예술창작지원(활동)] 평가 결과 우수작 차년도 [예술활동지원] 지원 선정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금년 평가결과는 차년도 심의에 반영됩니다.

⑧ 홍보물 제작 관련 안내

- 각종 홍보물(현수막, 포스터, 전단, 팸플렛 등)과 인쇄물을 제작하는 경우
[후원 :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화성시, 화성시문화재단] 기재 및 로고 삽입 필수
- 공연프로그램, 리플렛, 포스터, 도록 등 인쇄물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 화성시, 화성시문화재단의 화성예술가활동지원(경기 예술활동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았습니다.” 기입 필수
- 서적, 음반 등 인쇄물
“이 책(음반)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 화성시, 화성시문화재단의 화성예술가활동 지원(2022 경기예술활동지원사업)을 지원받아 발간(제작)되었습니다” 기입 필수
- 후원로고 다운로드 및 동탄북합문화센터 게재 홍보물 규격 바로가기
blog.naver.com/hcfart
※ 사업 1개월 전 홍보물(인쇄물 또는 이미지)을 담당자에게 송부하여 재단 홈페이지에 업로드되어야 합니다(필수).
※ 동탄북합문화센터 내 오프라인 홍보물 게시 협조 요청 시 게재 도와드립니다.

⑨ 문의

- 화성시문화재단 예술창작지원팀 031-290-4672
- 문의시간 평일 10시~17시(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2022
화성예술가활동지원
지원안내서

IV

세부 사업별 공모안내 (기술 융·복합)



IV

세부 사업별 공모안내 (기술 융·복합)

① 공모내용

- **예술창작지원(기획)** 기술 융·복합 예술 창작준비·기획과정·연구과정 지원
- **예술창작지원(활동)** 기술 융·복합 예술 작품창작 및 공연/전시/상영활동 지원
- **예술활동지원(모든예술31)** 기술 융·복합 예술 기존 작품 공연/전시/출간/상영 활동 지원

② 지원규모

- **예술창작지원(기획)** 정액 3백만원
- **예술창작지원(활동)** 평균 5백만원
최저 3백만원 ~ 최고 1천만원 신청 가능
- **예술활동지원(모든예술31)** 평균 3백만원
최저 3백만원 ~ 최고 7백만원 신청 가능

③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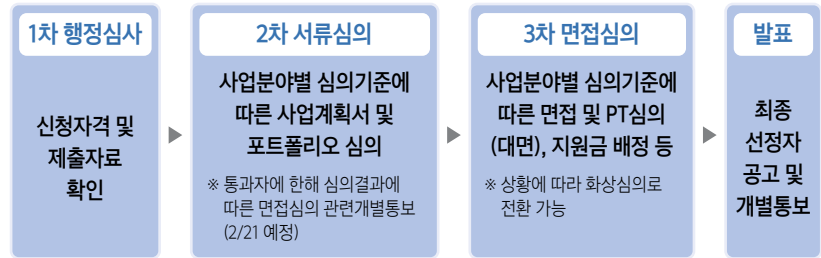
화성시 관내에서 예술창작 및 활동 진행할 경기도 거주(소재) 예술인(단체)

④ 세부 지원방향

구 분	지원내용	성과물*필수	지원한도 (백만원)
예술창작 지원 (기획)	· 기술 융·복합 예술창작과정지원(기획, 실험, 리서치, 영상제작, 연구개발 등) · 외부전문가 컨설팅 1회	영상, 사진, 연구결과 등 결과물	3백만원 (정액)
		성과보고서	
예술창작 지원 (활동)	· 창작활동 및 공연/전시/상영 지원 · 외부전문가 현장평가 1회	공연/전시/상영 진행	최저 3백만원 최고 1천만원
		사진 또는 영상, 링크 포함 성과보고서	
예술활동 지원	· 기존작품 공연/전시/출간/상영 지원	공연/전시/출간/상영 진행	최저 3백만원 최고 7백만원
		사진 또는 영상, 링크 포함 성과보고서	

⑤ 심의방식

- **심의기준** (역량평가) 사업주체의 예술역량, 사업주체의 발전가능성, (기획력) 예술성, 보편성, 사업 계획의 완성도
- **심의절차**



※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금 결정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코로나19 관련 정부대응 조치에 따라 심의 방식과 절차가 변경될 수 있음.

⑥ 필수 제출자료

-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1부
- 포트폴리오 1부
- **화성시 거주/소재자로 가산점 해당하는 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 **서류심의 통과자** PT자료 1부
 - 2차 서류심의 통과 시 제출하며 상세 내용은 면접심의 대상자에 한해 다시 안내
 - PDF 파일로 제출(1페이지에 1면 보기)

● 파일명 설정 안내 ●

📁 메일 제목 및 파일명

- 예술창작지원(기획)_융복합_지원자명(단체명)
- 예술창작지원(활동)_융복합_지원자명(단체명)
- 예술활동지원(모든예술31)_융복합_지원자명(단체명)

- ※ 공고문 내 첨부파일의 지원신청서 지정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 전자우편으로 제출서류 및 자료 발송(artsupport@hcf.or.kr)
- ※ 추후 선정자에 한해 서명한 지원서 원본 제출
- ※ 접수마감일 마감시간(18:00) 이후 제출서류 미인정
- ※ 접수여부는 개별 전자우편을 통해 개별 회신 예정
- ※ 별도의 신청서(양식)로 제출시 심의에서 제외

⑦ 유의할 점

- 예술창작지원(기획), 예술창작지원(활동), 예술활동지원 중 택1하여 지원 신청해 주세요. (동일인-단체-의 중복신청 및 여러 건 신청은 불가합니다.)
- 단체의 경우 지원금의 5%에 해당하는 비용은 자부담 편성이 필수입니다.
- 동일한 사업으로 추후 연속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예술창작지원(기획)’부터 단계별 신청을 권장합니다.
- 동일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타문화재단, 지자체 등의 지원을 받은 사업은 지원 선정 이후라도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 취소됩니다.
- 표절작품을 지원신청 하였을 경우, 지원이 결정된 후에도 지원결정이 취소되며, 해당단체·대표자 및 당사자는 향후 지원사업 신청이 불가합니다.
- 지원금을 받는 예술활동에 수익이 발생하는 모델을 권장하며, 발생한 수익금은 전액 해당 지원사업에 사용하거나 정산 시 반환이 원칙입니다.
- [예술창작지원(기획)] 평가 결과 우수작 차년도 [예술창작지원(활동)] 지원 선정, [예술창작지원(활동)] 평가 결과 우수작 차년도 [예술활동지원] 지원 선정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금년 평가결과는 차년도 심의에 반영됩니다.

- 각종 홍보물(현수막, 포스터, 전단, 팸플렛 등)과 인쇄물을 제작하는 경우
[후원 :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화성시, 화성시문화재단] 기재 및 로고 삽입 필수
- 공연프로그램, 리플렛, 포스터, 도록 등 인쇄물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화성시, 화성시문화재단의 화성예술가활동지원(경기에
술활동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았습니다.” 기입 필수
- 서적, 음반 등 인쇄물
“이 책(음반)은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화성시, 화성시문화재단의 화성예술가활동
지원(2022 경기예술활동지원사업)을 지원받아 발간(제작)되었습니다” 기입 필수
- 후원로고 다운로드 및 동탄복합문화센터 게재 홍보물 규격 바로가기
blog.naver.com/hcfart
※ 사업 1개월 전 홍보물(인쇄물 또는 이미지)을 담당자에게 송부하여 재단 홈페이지에 업로드되어야
합니다(필수).
※ 동탄복합문화센터 내 오프라인 홍보물 게시 협조 요청 시 게재 도와드립니다.

⑨ 문의

- 화성시문화재단 예술창작지원팀 031-290-4672
- 문의시간 평일 10시~17시(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2022
화성예술가활동지원
지원안내서

V

세부 사업별 공모안내

(문학분야)



V

세부 사업별 공모안내 (문학분야)

① 공모내용

- **예술창작지원(활동)** 문학분야 신규작품 창작 및 출간지원 (연내출간의무)
- **예술활동지원(모든예술31)** 기존 작품을 통한 북토크 등 출간회 지원

② 지원규모

- **예술창작지원(활동)** 평균 4백만원
최저 3백만원 ~ 최고 5백만원 신청 가능
- **예술활동지원(모든예술31)** 평균 3백만원
최저 2백만원 ~ 최고 4백만원 신청 가능

③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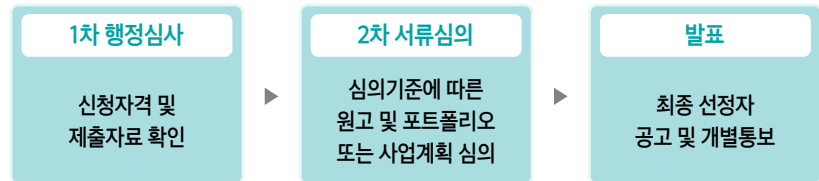
화성시 관내에서 예술창작 및 활동을 진행할 경기도 거주(소재) 예술인(단체)

④ 세부 지원방향

구 분	지원내용	성과물*필수	지원한도 (백만원)
예술창작 지원 (활동)	• 창작활동 출간 지원 • 정산요건 간소화	책 출간 진행	최저 3백만원 최고 5백만원
		출간완료 후 책 5권 내외 송부, 성과보고서	
예술활동 지원 (모든예술31)	• 기존작품 북토크 및 북콘서트 등 출간회 지원	북토크 등 진행	최저 2백만원 최고 4백만원
		사진 또는 영상 포함 성과보고서	

⑤ 심의방식

- **심의기준** (역량평가) 사업주체의 예술역량, 사업주체의 발전가능성, (기획력) 예술성, 보편성, 사업계획의 완성도
- **심의절차**



※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금 결정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코로나19 관련 정부대응 조치에 따라 심의 방식과 절차가 변경될 수 있음.

⑥ 필수 제출자료

공 통	
• 지원신청서 1부 • 포트폴리오 1부(*등단확인 및 주요작품 발표 실적자료 포함 필수)	
예술창작지원(활동)	예술활동지원(모든예술31)
• 미발표신작, 출판 작품 원고의 60% 이상 제출(PDF 제출)	• 기존 출간(발표) 작품 제출(PDF제출) ※ 만65세 이상 도서원본 현장제출 가능 • 사업계획서 1부

- **화성시 거주/소재자로 가산점 해당하는 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 **선정자 필수 제출서류** 22년 9월까지 출판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증빙자료
 - 선정자에 한해 제출하며 상세 내용은 선정 후 개별안내
 - PDF 파일로 제출(1페이지에 1면 보기)

● 파일명 설정 안내 ●

✎ 메일 제목 및 파일명

- 예술창작지원(활동)_문학_지원자명(단체명)
- 예술활동지원(모든예술31)_문학_지원자명(단체명)

- ※ 공고문 내 첨부파일의 지원신청서 지정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 전자우편으로 제출서류 및 자료 발송(artsupport@hcf.or.kr)
- ※ 추후 선정자에 한해 서명한 지원서 원본 제출
- ※ 접수마감일 마감시간(18:00) 이후 제출서류 미인정
- ※ 접수여부는 개별 전자우편을 통해 개별 회신 예정

⑦ 문학부문 정산안내

- 문학부문 [예술창작지원(활동)]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금의 100%를 출간비용으로 사용하셔야하며, 이자액 발생내역 확인 등을 위해 [지원금 교부-출판사로 송금]까지의 통장거래내역 및 이체확인증을 제출해주셔야함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기간 내 발생한 이자액은 액수에 관계없이 모두 반납해야하므로 보조금 전용 통장을 사용해주셔야 합니다.
- 문학부문 [예술창작지원(활동)]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금 300만원 이하의 경우 영수증빙 없이 출판물(결과물)과 통장거래내역 확인으로 정산을 갈음합니다.
※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운영규칙 제9조 2항 참조
- 지원금이 300만원 초과이나 영수증빙이 불가한 경우 담당자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⑧ 유의할 점

- 예술창작지원(활동), 예술활동지원 중 택1하여 지원 신청해주세요.(동일인·단체-의 중복신청 및 여러 건 신청은 불가합니다)
- 단체의 경우 지원금의 5%에 해당하는 비용은 자부담 편성이 필수입니다.
- 동일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타문화재단, 지자체 등의 지원을 받은 사업은 지원 선정 이후라도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 취소됩니다.
- 표절작품을 지원신청 하였을 경우, 지원이 결정된 후에도 지원결정이 취소되며, 해당단체·대표자 및 당사자는 향후 지원사업 신청이 불가합니다.
- 지원금을 받는 예술활동에 수익이 발생하는 모델을 권장하며, 발생한 수익금은 전액 해당 지원사업에 사용하거나 정산 시 반환이 원칙입니다.

⑨ 홍보물 제작 관련 안내

- 각종 홍보물(현수막, 포스터, 전단, 팸플렛 등)과 인쇄물을 제작하는 경우
[후원 :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화성시, 화성시문화재단] 기재 및 로고 삽입 필수
- 공연프로그램, 리플렛, 포스터, 도록 등 인쇄물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화성시, 화성시문화재단의 화성예술가활동지원(경기 예술활동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았습니다.” 기입 필수
- 서적, 음반 등 인쇄물
“이 책(음반)은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화성시, 화성시문화재단의 화성예술가활동 지원(2022 경기예술활동지원사업)을 지원받아 발간(제작)되었습니다” 기입 필수

- 후원로고 다운로드 및 동탄복합문화센터 게재 홍보물 규격 바로가기

blog.naver.com/hcfart

※ 사업 1개월 전 홍보물(인쇄물 또는 이미지)을 담당자에게 송부하여 재단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어야 합니다(필수).

※ 동탄복합문화센터 내 오프라인 홍보물 게시 협조 요청 시 게재 도와드립니다.

10 문의

- 화성시문화재단 예술창작지원팀 031-290-4672
- 문의시간 평일 10시~17시(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2022
화성예술가활동지원
지원안내서

VI

예산편성 및 정산



VI

예산편성 및 정산

추진근거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재정법」
- ▶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 ▶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조례」
- ▶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운영규칙

● 사업 및 정산기간

지원받은 사업은 2022년 11월 15일까지 필히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결과보고서를 제출 완료해야 합니다. 11월 사업 진행 시 반드시 11월 30일까지 정산 및 성과보고, 결과물 제출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결과물 제출 지연시 사업평가 불이익 있을 수 있으며 차년도 심의에 반영 가능)

주요과정

구분	번호	절차	시기	설명
교부 전	1	최종결과 발표	3. 4. (금)	· 재단 홈페이지 공고
	2	최종사업 계획서 제출	3. 18.(금) 까지	· 지원결정액을 반영 최종사업계획서 제출
	3	교부신청	3. 23.(수) 까지	· 지원금 전용통장 개설 · 지원금 통장 연결 체크카드 발급 · 교부신청서 이메일 제출 · 심의시 조건부 의결로 선정된 경우,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신청서 작성 · 예술단체인 경우 총 사업비의 최소 5% 해당하는 자부담금 의무 사용 · 회계검토비 책정 : 지원금 300만원 이상 수혜하는 경우 교부신청시 지원금으로 회계검토비를 책정

구분	번호	절차	시기	설명
교부전	4	사업포기 신청	3. 31.(목) 까지	·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결과발표 후 약정된 기간 이내에 사업포기신청서를 제출 및 담당자에게 유선연락
교부	5	지원금 교부	3월 중	
정산	6	지원금 정산 및 성과보고	기한 : 2022. 11. 30.(수)	· 정산서 제출 ※기한 엄수, 선정 후 서식 제공 · 성과보고서 제출 ※기한 엄수, 선정 후 서식 제공 ex) 사업이 5월에 종료된 경우,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인 6월 이내 정산 및 성과보고서 제출 · 잔액 및 이자 반납

① 예산관련 사전 안내

● 교부신청서의 적정성 검토

- 신청서 적정성 검토 : 교부신청서의 사업내용이 지원신청시 당초계획보다 상당 부분 다를 경우, 재단은 보조금 규모를 재조정하거나 해당 사항을 사후 평가에 반영 가능
- 보조금 취소 : 지원제한 사유(아래)에 해당할 경우 지원 선정 사후라도 지원 취소 가능

● 교부신청 이후 사업 변경

- 사전 재단 승인 : 보조금의 집행은 교부신청서상의 예산집행 계획에 의하여 집행해야 하며, 교부신청 이후 사업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지원사업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전체적으로 조정해야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재단의 승인을 받아서 변경
- 보조금 취소 : 사업변경이 당초 기대했던 사업효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 될 경우 재단은 교부 결정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가능

● 지원 제한 사유

재단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된 보조사업자는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지원사업 신청자격을 상실함

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 신청사항을 위반할 것이 확실히 예상되거나 위반하였을 때
2. 지원사업의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3. 임의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또는 중단하였을 때
4. 자체부담금확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였을 때
6. 이 규정에 의한 의무나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7. 보조금 정산서를 특정한 이유없이 1개월 안에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였을 때

② 예산편성

● 인건비성 사례비 편성제한

- 지원금이 500만원 초과인 경우, 전체 사업비의 50% 초과하여 인건비성 사례비 편성 불가
- 지원금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예술창작지원(기획)]의 경우 상기 제한 없음

● 단체 대표자 사례비

- 예술활동 실연시(연주, 연기, 전시, 출간 등) 대표자 사례비 인정
- 기획, 연출 등의 대표자 사례비는 미인정
- 단, [예술창작지원(기획)]의 경우 지원금의 15% 이내로 편성 가능
- 한도 : 지원금의 15% 이내, 최대 150만원

● [예술창작지원(기획)]의 경우 본인 사례비

- 예술활동 및 창작활동시 본인 사례비 인정
- 한도 : 지원금 내 20%

● [예술창작지원(활동)], [예술활동지원]의 경우 본인 사례비

- 예술활동 및 창작활동시 본인 사례비 인정
- 한도 : 150만원 한도

● 자부담

- 예술단체인 경우, 지원금의 5% 이상을 자부담으로 책정(개인예술인 제외)
- ※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자부담률 완화조치(2020~2022)

● 예술인 고용보험가입

- 사업시 의무적으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에 대해 피보험자 격 관련 신고를 하고 고용보험료 납부 등을 해야 함(교부시 관련 세부내용 안내 예정)

● 홍보비 책정

- '예술창작지원(활동)' 및 '예술활동지원'의 경우 전체 사업예산의 **10% 홍보비** (홍보물 제작, 광고선전비, 책자 제작 등) 책정 필수
- 사업 운영 중 변경신청으로 홍보비 10% 이하로 조정 불가→잔액발생시 불용, 반납

● 회계검토비 책정

- 지원금 300만원 이상 신청하는 경우, 교부신청시 사업비 내에서 회계법인의 회계검토비를 책정

사업비(지원금+자부담)	회계검토비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150,000원
5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	217,000원
1500만원 이상 ~ 2100만원 이하	290,000원

※ 참고사항: 상기 회계검토비는 2021년 기준 금액으로 금년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확정 공지 예정

● 예산 편성 불가 항목

- 예산 편성 불가 항목

구분	세부내용
지원사업자의 일상적인 운영경비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품 및 집기구 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
단체운영 목적의 자본적 경비	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설비 등
지원금을 통한 재교부사업 관련 경비	상금, 상금 심사비 등
기타 사항	행사 기념품 구입, 업무추진비 등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접경비, 지원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

※ 지원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

- 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 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 위생업종 : 아·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 클럽, PC방, 스키장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③ 집행 및 정산 안내

● 집행원칙

- 집행방식

- 지원금 체크카드 및 계좌이체(세금계산서발행) 집행 원칙
- 통장에서 현금 인출 후 현금 집행 금지
- 지원금 일괄 인출 후 사후 정산관리 불가
- 이체수수료는 자부담으로 집행(집행 사후 입금 가능)

- 집행증빙

- 정산서 및 결과보고서, 지원금 통장, 지출 증빙자료 간에는 집행 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해야 함
- 영수증 등 증빙자료는 건별 집행과 동시에 적법하게 발급받아야 하며, 사업 종료 후에 일괄 소급하여 발급받지 않도록 해야 함

- 거래불인정

- 친족 간 거래
- 출연진(참여자)과 관련된 업체와 거래

● 인건비성 경비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

- 보조금 증빙서로 제출 시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와 거주자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세금납부영수증 총 3가지 서류 제출
- 신고 시, 해당 단체 고유번호(개인일 경우 주민번호)로 신고
- 사례비 지급 시, 세금 제외한 금액 입금

📁 사례예시

지출상황 : 김경기씨의 직업은 연출가. ○○워크숍에서 강연을 하여, 30만원의 사례비를 받기로 하였음

① 기타소득세 신고

② 00합창단은 30만원의 8.8%인 26,400을 제외한 273,600원을 김경기씨에게 입금합니다. 그리고 26,400원은 세금 납부를 합니다.

- 납부방법

- 관할 세무서 원천징수이행사항 신고서 작성 → 해당 은행 고지서 납부
- 인터넷 원천징수이행사항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고지서 프린트 → 해당 은행 고지서 납부
- ※ 홈택스, 위택스 등 온라인으로도 납부 가능(해당 설명서 지원사업 선정 시 별도 메일 송부)

● 단체 대표자 사례비

📁 대표자(본인) 사례비 세금 신고 및 납부

- 법인의 경우 : 대표와 출연자로서 출연계약을 작성하여 지급
- 개인사업 및 개인의 경우 : 원천징수신고의무자와 지급대상자가 동일하여 계약이 성립하기 어려우며 원천징수 신고·등록이 불가하므로 종합소득세로 신고·납부함

● '23년도 NCAS 도입 예정 안내

- 2023년 NCAS 활용 온라인 신청 및 정산 시스템 도입 예정
- 2022년 NCAS 정산 교육 진행 및 정산과정 시범적 도입
- 2022년 7월 이후 사업진행자에 한해 NCAS를 통한 온라인 정산 가능
(하반기 수요조사 예정)

④ 지원금 정산 및 성과보고

● 정산서 회계검토

- 외부회계법인 : 사업비 300만원 이상시 외부 회계법인에서 정산 진행. 회계검토가 완료되면 정산서 표지에 해당 회계법인이 발급한 검토보고서가 첨부

● 정산확정

정산서 및 관련 증빙서류의 검토결과에 따라 보완사항을 요청할 수 있음

● 집행 잔액 및 이자반환

지원사업자는 지원금의 '집행 잔액' 및 지원금계좌에서 발생한 '예금결산이자'를 별도로 구분 정산하며 기한(사업종료 후 30일) 내에 재단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 (반납관련 담당자 별도 연락 후 진행 요망)

● 성과보고서 및 성과물

- ※ 성과보고서 및 성과물은 지원사업의 필수제출자료이며(문학부문 포함), 기한 내 미제출시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해당 평가결과는 차년도 심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성과보고서 : 사업 내용 및 진행 상황, 성과 등을 제3자가 파악 할 수 있도록 성실히 작성
- 성과물 : 진행사진, 도록, 자료집, 관련 책자, 음반, 발간 사업 시 출판한 책 등 사업과 관련하여 제작된 자료 취합

- 2022 화성예술가활동지원 지원안내서



